

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3. 4. 5 선고 2022가단18466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종덕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2023. 3. 15.

판 결 선 고 2023. 4. 5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기도 양평군 D 대 274㎡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22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건물 78㎡를 철거하고, 위 토지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원고는 경기도 양평군 D 대 274㎡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의 소유자이다.

나.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22, 1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‘ㄱ’ 부분 건물(이하 ‘이 사건 건물’이라 한다)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.

[인정근거] 갑 제1, 2, 4호증, 을 제1, 2호증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주장 및 판단

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면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.

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전 소유자 E으로부터 매수하여 2,500만 원을 들여 수리하고 2012. 6.

30.부터 10여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으며, 원고는 피고들이 이사 나갈 경우 이 사건 건물 값으로

3,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나,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소유권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권능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고, 금전 지급 약속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.

3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조정웅

감 정 도



